



美 테바 제약, 와이어스 제약과 맺은 불가침 협약 연장에 합의

미 국 테바 제약산업(Teva Pharmaceutical Industries Ltd)이 동사의 라이벌인 와이어스 제약(Wyeth Pharmaceuticals) 및 알타나 제약(Altana Pharma)과 와이어스의 궤양 치료제 프로토닉스(Protonix)의 제네릭 버전 판매와 관련해 맺은 불가침 협약(standstill agreement)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와이어스와 알타나는 그동안 연간 2십 5억 달러의 판매고를 올리는 프로토닉스의 제네릭 버전을 테바측이 판매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테바는 양측간에 진행되고 있는 특허침해소송 문제를 계속 논의할 수 있도록 프로토닉스의 제네릭 버전의 추가 보급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출처 : Reuters 2008. 1. 22

美 Verathon, AIRCRAFT 상대로 후두경 특허침해소송 제기

미 국 시애틀에 소재한 의료기기 개발업체 Verathon이 영국 에딘버러에 소재한 라이벌 기업 AIRCRAFT Medical사를 특허침해혐의로 제소했다.

Verathon은 AIRCRAFT사의 McGrath(R) Series 5 비디오 후두경이 동사의 유럽특허 1,307,131호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AIRCRAFT에 대해 3천 7백만 파운드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Verathon은 AIRCRAFT사가 동 후두경의 판매를 시작하기 거의 1년 전인 2006년 2월에 시애틀에서도 이와 관

련된 소송을 제기했으나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당했으며, 그해 6월, 미국 조지아주에서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AIRCRAFT사가 Verathon의 미국 특허(6,543,447호)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여 미 특허상표청에서 재조사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판결이 연기된 바 있다. 현재 미 특허상표청은 Verathon의 동 특허와 관련된 모든 클레임에 대해 무효를 선언한 상태이다.

에딘버러 법원에서 제기된 이번 소송에 대해서도 AIRCRAFT사는 특허 침해 사실이 없으므로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지 출처: medgadget.com]
AIRCRAFT사의 후두경



[이미지 출처: verathon.com]
Verathon사의 후두경

출처 : PR News Wire 2008. 1. 21

인도 랜박시, 편두통 치료제 판매와 관련해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화해

인도의 제약업체 랜박시(Ranbaxy Laboratories)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laxoSmithKline)의 편두통 치료제 이미트렉스(Imitrex, 호박산 수마트립탄(Sumatriptan Succinate)) 정제의 제네릭 버전 판매와 관련해 글락소측과 소송이 임박했던 모든 쟁점에 대해 화해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의 조건에 따라, 랜박시는 미국 내에서 호박산 수마트립탄 정제의 제네릭 버전(25mg, 50mg, 100mg)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올해 12월경부터 판매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이외의 다른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내 이미트렉스의 연간 판매고는 약 9억 8천 5백만 달러에 달한다.



[이미지 출처: migrainehelp.com]

출처 : India Infoline 2008. 1. 21

美 대법원, LG전자 대 콰타 컴퓨터의 특허분쟁에 관한 심리 개시

미 대법원이, 최종 판결이 특허권자들의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LG전자 대 대만의 콰타 컴퓨터의 특허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LG전자는 동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있는 미국의 인텔사가 콰타 컴퓨터에 판매한 칩

세트에 LG로부터 라이선스 받은 제조 기술이 사용되었으며, 인텔사의 것이 아닌 부품이 탑재되었기 때문에, 콰타사도 인텔이 체결한 라이선스 협약의 내용에 따라 LG 측에 동 기술의 사용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당히 복잡한 문제이나, 6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법원의 최종 판결은 '소진된 특허(exhausted patent)' 라는 그동안 법적으로 명백하지 않았던 문제를 명확히 해결해 줄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출처 : engadget 2008. 1. 20



[이미지 출처: engadget]



美 연방법원, 'AngioDynamics가 금지명령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AngioDynamics는 연방지방법원의 Nathaniel Gorton 판사가 Diomed가 주장한 동사의 영구금지명령 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Diomed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AngioDynamics사는 지난해 7월 2일, 재판을 통해



VenaCure Kit
[이미지 출처: AngioDynamics]

Diomed의 특허(미 특허번호 6,398,777)에 대한 특허침해 혐의가 인정되어 동사의 레이저 혈관 치료용 1회용 키트(VenaCure(R)) 및 동 키트와 함께 사용되는 레이저 콘솔에 대해 판매금지명령을 받았다.

AngioDynamics측은 금지명령이 내려지기 전부터 이 1회용 키트에 대한 판매는 중지했으나, 레이저 콘솔은 신제품 NeverTouch VenaCure키트와 함께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판매했다고 한다.

Gorton 판사는 AngioDynamics가 동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키트 및 레이저 콘솔을 제조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각 사유로 밝혔다.

AngioDynamics는 7월 2일에 내려진 소송의 결과에 대해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으며, 이에 대한 구두 변론은 3월이나 4월중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출처 : CNN 2008. 1. 17

